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법 제30조제1항”을 “법 제3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)”를 “3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입주자”를 “입주자등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.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, 인감증명서(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)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

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(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)의 제7호(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)를 삭제한다.

별지 제39호서식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, 인감증명서(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

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		30일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상호(법인명)	전화번호
	주소	
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	성명(대표자)	
	상호(법인명)	전화번호
	주소	
피신청인	성명(대표자)	
	상호(법인명)	전화번호
	주소	

조정을 받으려는 사항

※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사용

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-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(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) 1부 -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, 인감증명서(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- 임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-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-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	조정 신청 수수료 (국토교통부장관 이 별도로 고시하 는 금액)
------	--	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후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)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후에 법 제29조제2항,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) <u>법</u>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, 교체·보수 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.	제9조(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) <u>법</u> 제30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.
제15조(행위허가 신청 등) ① (생략)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 기준란 2) 및 같은 표 제6호나 목의 신고기준란 1)에서 “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”이란 각각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적합한 범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 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 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·철 거 또는 증축·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~ 7. (생략) ③·④ (생략)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“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	제15조(행위허가 신청 등) ① (현 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3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~ 7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.

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⑥ ~ ⑨ (생략)

제34조(조정신청 등)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중양분쟁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) 각 1부

----- 입주자등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조정신청 등) ① -----

-----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.
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, 인감증명서(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)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

3. ~ 5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<u>부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